

# 예 산 총 칙

201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32,264,798	12,967,944
일반회계	366,237,127	10,987,114
특별회계	66,027,671	1,980,830
기타특별회계	66,027,671	1,980,830
주차장특별회계	58,641,000	1,759,230
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	6,975,145	209,254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	411,526	12,346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다.

제 4 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없다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60,60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967,944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(예산이용) 다음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 단,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55조 제1항의 1,2,3호 제외

1. 공공요금
2. 제세 공과금, 배상금
3. 차입금의 원리금
4. 재해대책 및 복구비

제 10 조 (간주처리)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, 교부금, 재정보전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